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내용

티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한 정책의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

- 아 래 -

I.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서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1)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2) 판매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정보. 다만,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 제외함
 -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1개월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정보. 다만,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 제외함
 - 4)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설정	- 고유자산부문 (고유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고객자산부문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총괄 책임자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지정	-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대표이사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 정보교류차단 업무총괄 조직 : 준법감시부서 - 고유자산부문 : 고유재산운용본부장 - 고객자산부문(집합투자재산) : 고객자산운용본부장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회사의 금융투자업 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인식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의 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성 또는 투자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정보공개사항에 대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 추정 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IV.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대응방안 및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 과정에서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임직원 등의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 제51조에 따라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이해상충방지의 원칙

회사는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이익이 추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 1) 고객의 이익은 회사, 주주, 그리고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2.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이해상충문제 유형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임직원의 개인투자행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설정한 투자제한 종류의 개인적인 거래 금지. 단, 회사 입사 전 보유주식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후 매도만 가능
재산상이익 제공 및 수령	회사에서 설정한 한도 이상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펀드에서 매수하거나 펀드에서 보유한 자산을 회사에서 매수하는 행위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은 정보교류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차단
펀드에서 보유한 증권의 빈번한 매매를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지불 하는 행위	분기별 투자중개업자 선정 절차 및 수수료 배분 결과를 점검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집합투자기구간 집합투자재산의 거래는 법규상 허용된 절차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후에 거래 가능
의결권의 행사	회사의 내부 자산운용기준에 따른 투자자의 이해에 반하는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며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사함.

3. 이해상충의 관리

- 1)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는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및 이해상충방지 등의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임직원이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임직원이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협의하여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6)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거래하여야 하며,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